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

2006. 1. 16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월 3일 · 종로구청장
 나. 회부일자 : 2006년 1월 6일
 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
 제5차(2006. 1. 16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-1677(2005.12.1)호로 『교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승인공고』 뒤에 따라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68(2003.11.20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)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1)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도심부)
 - 용도지역(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)변경결정조서

구 분		계				비고
		기정	증·감	변경	구성비(%)	
계		160,425.70	-	160,425.7	100.0	
주거 지역	소계	143,673.70	감209.80	143,463.9	89.4	
	일반 주거	제1종	180.00	18,971.00	19,151.0	11.9
		제2종 (7층이하)	86,164.60	감81,423.60	4,741.0	3.0
		제2종 (12층이하)	2,270.00	38,518.80	40,788.8	25.4
		제3종	55,059.10	23,724.00	78,783.1	49.1
상업 지역	일반상업	16,752.00	209.8	16,961.8	10.6	

○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의종류	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		명칭	세분류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(1)	공공청사	동사무소	행촌동 180-10일원	-	증) 910.0	910.0	교남1
신설	(2)	공공청사	파출소	송월동 116일원	-	증) 600.0	600.0	교남1
신설	(3)	공공청사	교통순찰대	행촌동 158-8일원	-	증) 2,500.0	2,500.0	교남1

3. 質 疑 및 答 辯 要 旨 : 생 략

4. 意 見 採 擇 : 없 음

5. 其 他 必 要 한 事 項 : 없 음

6. 審 査 結 果 : 원안 가결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)